# 내부통제규정

2023. 6. 28. 제정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【목 적】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【적용범위】

이 규정은 연구소의 모든 대내외업무 및 연구소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에 적용한다.

## 제3조 【정의】

-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"내부통제"란 연구소 내 부정과 오류의 사전 예방과 적시 발견, 경영진의 정책 및 규정 준수에 의한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말한다.
- 2. "내부통제기준"이란 내부통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.
- 3. "준법감시"는 내부통제기준과 내규 등 제반 법규 및 선관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적·상시적 통제활동을 말한다.

#### 제2장 내부통제체제

#### 제4조 【내부통제조직 및 역할】

- 1.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.
- 2.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내부통제업무를 기획·통할한다.
- 3. 팀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통할하며, 리스크 관리, 회계, 정보보안, 준법감시. 윤리경영 등 각 부서의 분야별 내부통제업무를 통할한다.
- 4.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【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】

- 1. 내부통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대표이사, 본부장, 준법감시인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안건과 관련된 팀장 등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2.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6조 【위원회의 역할】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- 1. 내부통제 분야별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검토
- 2. 내부통제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의 심의·의결
- 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#### 제7조 【위원회의 운영】

- 1.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2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3. 의결안건의 경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4. 위원회는 회의 소집, 의사록 작성, 기타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준법감시인으로 한다.

## 제8조 【준법감시인】

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윤리·준법 관련 종합 기획
- 2. 불공정행위 등 임직원 윤리·준법 위반사항 처리
- 3. 이해상충 문제의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
- 4. 윤리·준법 관련 조치 및 사후관리
- 5. 기타 윤리·준법에 관한 사항

#### 제3장 내부통제기준

## 제9조 【업무분장 및 조직구조】

1. 연구소는 업무의 성격·절차·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

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조직구조를 설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.

- 1)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것
- 2) 상호경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할 것
- 3)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고 승인절차를 마련할 것
- 4)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는 동일한 부서내 또는 동일한 임직원에 의하여 겪임되지 않을 것

## 제10조 【위험의 관리】

- 1.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.
- 2. 위험관리시스템은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감시·점검되어야 한다.

## 제11조 【정보관리 및 의사소통】

- 1. 연구소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련 임직원에게 신속·정확하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2. 정보전달체계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3. 모든 대외 접수·발송문서는 접수 또는 발송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
- 4.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## 제12조 【고객정보 등 비밀정보의 관리】

- 1.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(문서기록·복사본·구두·파일·전자메일·팩스 등)로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. 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일단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한다.
- 3. 임직원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다.
- 4. 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5. 연구소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비밀유지 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- 6.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다.
- 7.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 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 【선관의무 및 고객이익 우선】

- 1.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2. 임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연구소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3. 고객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한다.
- 4.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.

#### 제14조 【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】

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규 또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, 상사나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15조 【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】

- 1. 임직원은 대내외 업무 및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연구소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, 허위·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.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소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3. 임직원은 직무수행의 대가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, 선물,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향응, 그 밖의 직·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, 제공 내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임직원은 특정 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평가대상기업에 ESG 평가기관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,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이용 여부에 따라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제16조 【이해상충 방지】

- 1. 임직원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연구소 또는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. 임직원은 연구소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소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연구소의 자산 또는 인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다.
- 3. 연구소는 계열회사로부터 업무를 분리하여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이 연구소의 업무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, 연구소의 ESG 평가 체계 등을 포함한 각종 기준의 제·개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4. 연구소는 출자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를 배제하고, 평가 대상 회사에 출자 관계가 있는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- 5. 임직원이 이해상충발생을 예상하여 연구소 대표에게 보고하였거나 연구소가 이해상충발생을 예상하였을 경우, 연구소는 해당 임직원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업무배제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6. 연구소는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해상충의 내용, 범위, 영향을 파악하여 해당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## 제17조 【금융사고 예방】

- 1.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금전 출납은 각종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- 2. 법인 인감 및 각종 도장은 전결권자의 결재여부와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, 분실·도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- 3. 일상적인 경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비정상적인 거래의 발생 여부 및 각종 결재시 거래증빙과 상호대조 이행 여부 등을 상시적 으로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
- 4.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18조 【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】

제3장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제19조 【하부위임】
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 〈2023. 6. 28.〉

이 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